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안내문

(‘26. 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2026.6.9. 시행)으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 → 연 1회로 변경되어 10월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따른 매년 4월말(연1회)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제출
-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사업보고서 등 작성 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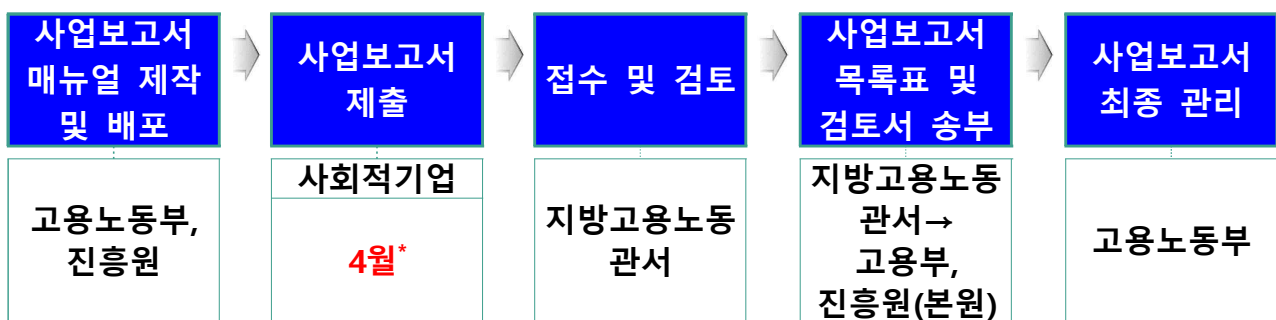
- ①(제1항) 법 제17조 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제2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유급근로자 명부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
3. 금년도 사업계획서
4.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업보고서 제출 절차

○ 사업보고서 제출 절차



*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하여 매년 4월말까지 온라인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시(별도 신청 필요),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 기업정보 - 인증지정 정보 - 인증변경신청 버튼 클릭 - 신규 작성

② 2025년도, 2026년도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사본 1부

※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 제출

③ 2027년도 사업계획서 1부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의무가 있는 조직형태에 해당하고, 2025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 필요

④ (정관 변경 시) 정관 사본 1부

※ 정관 변경 시(별도 신고 필요),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 기업정보 - 인증지정 정보 - 인증변경신청 버튼 클릭 - 신규 작성

⑤ (지점 변동 시) 본점 및 지점 현황 1부

※ **지점 설립·폐업 시(별도 신청 필요)**,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 기업정보 - 지점정보

⑥ (사업단인 경우)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사본 1부

⑦ 급여대장('26.12월 말 기준) 및 근로계약서('26.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⑧ 사회서비스제공 확인서('26.1월~12월)

⑨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26.1월~12월)

⑩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및 지점에 관한 사항 포함)

□ 사업보고서 미이행 시 제재조치

○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 대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0.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1)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만원
2)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90만원
3)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70만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00만원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3호	
1)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2)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90만원
3)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7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 안내문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진흥원에 신고

○ 사회적기업이 정관 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1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회적기업은 정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신고한 날이 14일 경과한 경우, 과태료 발생

* 기업이 시스템상 '변경 신고'한 기준이며, 이후 검토 기간과는 무관

□ 근거 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정관 등의 기재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 ·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관등의 기재사항) 법 제9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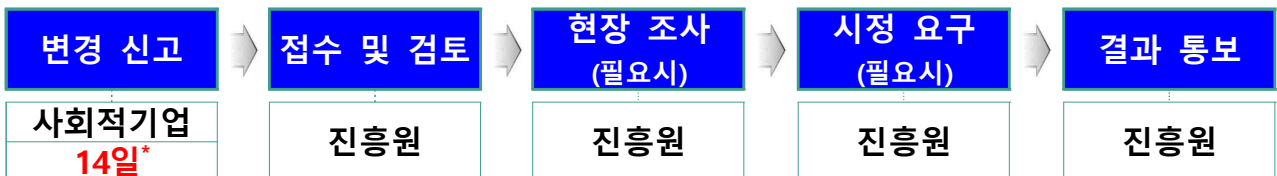
□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 [인증서 재발급 필요사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증서 재발급 필요사항](#))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사회적기업의 자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 정관 등 변경신고 절차

○ 정관 등 변경신고 절차



* 사회적기업은 정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시스템)에 반드시 신고

* 지연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변경 신고일**을 기준으로 발생(이후 검토 기간과는 무관)

□ 정관 변경신고 제출 서류

①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제출서류: 이사회 등 회의록, (신)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정관 개정사항 표기)

② 조직형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인법인 등

↳ 제출서류: 이사회 등 회의록, (신)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주무관청 정관변경 허가(인가)서

□ 변경일의 기산점

- ①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기산점: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

- ② 조직형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인법인 등

↳ 기산점: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받은 날

□ 정관 등 변경신고 미이행 시 제재조치

-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

*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0.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1)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만원
2)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90만원
3) 정관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70만원